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에관한기술기준

(내무부 고시 제1995-45호)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년 10월 20일

내무부장관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 기술기준

제 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설치장소의 구조)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당해층의 높이가 12.2m 이하일 것. 다만 2층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부분과 방화구획할 것
- 천정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 천정은 평평하여야 하며 철재나 목재 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부분이 102m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보로 사용되는 목재·콘크리트 및 철재사이의 간격이 0.9m 이상 2.3m 이하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m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정 및 반자의 넓이가 28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창고내의 선반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제 3조 (수원)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수리적으로 가장 먼 가지배관 3개에 각각 4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 선단의 압력이 천정의 높이가 9.1m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5kg/cm^2 이상, 천정의 높이가 9.1m 이상 12.2m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5.1kg/cm^2 이상으로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Q = K\sqrt{P} \times 12 \times 60 \text{min} \quad (K : \text{상수}(203 \text{ l/min} (\text{kg/cm}^2)^{1/2}) \\ P : \text{압력})$$

제 4조 (가압송수장치)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3조의 방사량 및 헤드 선단의 압력을 충족할 것
- 충압펌프 등 그 밖의 가압송수장치에 관하여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제1항제6호·제7호,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할 것.

제 5조 (배관)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습식으로 할 것
- 상시 보온이 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할 것
-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는 2.4m 이상 3.7m 이하로 할 것

4. 그밖의 배관에 관하여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17조를 준용할 것

제6조 (헤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7.4m^2 이상 9.3m^2 이하로 할 것
2.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정의 높이가 9.1m 미만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로, 9.1m 이상 12.2m 이하인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것
3. 헤드의 반사판은 천정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mm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4. 헤드는 보·닥트·기둥·조명기구 등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아래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정이나 반자 아래 153mm 이상 356mm 이하일 것
6.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정 또는 반자와 101mm 이상 152mm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mm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7.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mm 이상일 것
8. 헤드의 작동온도는 74°C 이하일 것. 다만, 헤드 주위의 온도가 38°C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작동에 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9. 장애물과 헤드사이의 수평거리에 따른 장애물의 하단과 그보다 윗부분에 설치되는 헤드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는 다음표에 의할 것

장애물과 헤드사이의 수평거리	장애물의 하단과 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0.3m 미만	0mm
0.3m 이상 ~ 0.5m 미만	40mm
0.5m 이상 ~ 0.6m 미만	75mm
0.6m 이상 ~ 0.8m 미만	140mm
0.8m 이상 ~ 0.9m 미만	200mm
0.9m 이상 ~ 1.1m 미만	250mm
1.1m 이상 ~ 1.2m 미만	300mm

1.2m 이상 ~ 1.4m 미만	380mm
1.4m 이상 ~ 1.5m 미만	460mm
1.5m 이상 ~ 1.7m 미만	560mm
1.7m 이상 ~ 1.8m 미만	600mm
0.8m 이상	790mm

제7조 (저장물품의 간격)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환기구)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 환기구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기의 유동으로 인하여 헤드의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2.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작동온도가 180°C 이상일 것

제9조 (설치제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물품에 대한 화재시험등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1. 제4류 위험물
2.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

제10조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의 준용)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송수구·전원·제어반 및 배선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5조·제18조·제20조내지 제22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제11조 (세부기술기준의 적용)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 세부기술기준에 관하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술상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설치된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